

균형을 유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세·등록세 과표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.

종합토지세 과표는 과표현실화의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·필지간 과표의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

건물과표의 경우 「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, 금년도에 개선된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이나 각종지수 및 가감산율의 적용 등 지역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겠다.

이와 아울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 지수·가감산율 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, 장기적으로는 건물과표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의 제고 등을 위해 우리부에서 공시건물가격제도(가칭)의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.

토지 및 건축물이외의 과세대상물건의 과표는 가격변동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가격이 하락한 경우등은 적시에 재조사하고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하여 납세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.

또한 과세대상물건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각 물건별로 현실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반영율을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송전철탑, 열수송관, 방송중계탑, 무선기지국시설물 등 2002년부터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의 시가표준액도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.

#### 다. 지방세 『체납율 1% 낮추기』 강력 추진

지방세 체납액은 IMF 관리체제 여파로 '97~'98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다소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, 경제난으로 금년도의 징수전망은 어려운 편이다.

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『체납율 1% 낮추기 운동』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과세의 구현 및 자진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.

이를 위하여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『체납율 1% 낮추기 추진단』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질적·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고질·